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2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8일
- 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5년 9월 18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9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)

- 가. 제안이유
 -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 - 1) 총 정원: 1,499명 (증 7명)
 - 2) 일반직 4급: 9명 → 10명 (증 1명)
 - 3) 일반직 5급: 67명 → 71명 (증 4명)
 - 4) 일반직 6급이하: 1,409명 → 1,411명 (증 2명)

기관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작급별						
총 계		1,499	1,499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494	1,494			
일반직	3급	1	1	-	-	-
	4급	10	8	1	1	-
	5급	71	38	2	13	18
	6급 이하	1,411	1,411			
	전문경력관	1	1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동시에 제출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개정내용에 따라 국, 과 등을 신설·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일반직 4급 1명, 5급 4명,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4급 1명, 일반직 5급 4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가 7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 및 제30조에서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2024년 3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며 실·국 기구 수 상한(4개이상 6개 이하)이 폐지된 이후에 4급 정원을 증원한 자치구는 우리 구 포함 13개(강서, 관악, 은평, 양천, 구로, 중랑, 동작, 마포, 동대문, 광진, 서대문, 종로 구)이며, 이 중 8명으로 증원한 자치구는 동작, 마포 2곳뿐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, 동 개정 조례안의 정원 조정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하기에, 신규 부서가 3개 설치되었으나 5급 정원이 4명 증원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.
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,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, 2022년 12월 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보통교부세 교부 시 기준인건비 초과액 전액을 패널티로 감액하도록 하였음.
- 우리 구(區)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,527억원이고, 우리 구(區)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,579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7명의 인건비는 연간 8억 3천만원으로, 개정안에 따른 인력

증원 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더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총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여 운영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현재 기준 우리 구(區)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 집행률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9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9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
- 1) 총 정원: 1,499명 (증 7명)
- 2) 일반직 4급: 9명 → 10명 (증 1명)
- 3) 일반직 5급: 67명 → 71명 (증 4명)
- 4) 일반직 6급이하: 1,409명 → 1,411명 (증 2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
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5. 8. 14. ~ 9. 3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492명”을 “1,49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456명”을 “1,46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	1,499	1,499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494	1,494			
일반직	3급	1	1	-	-	-
	4급	10	8	1	1	-
	5급	71	38	2	13	18
	6급 이하	1,411	1,411			
	전문경력관	1	1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492명</u>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56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499명</u>----- -----. 1. ----- <u>1,463명</u> 2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</u> <u>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u> <table><tr><th>기관별 직급별</th><th>총 계</th><th>본청</th><th>구의회 사무국</th><th>보건소</th><th>동</th></tr><tr><td>총 계</td><td><u>1,492</u></td><td colspan="4"><u>1,492</u></td></tr><tr><td>정무직</td><td>1</td><td colspan="4">1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<u>1,487</u></td><td colspan="4"><u>1,487</u>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일반직</td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<u>9</u></td><td><u>7</u></td><td>1</td><td>1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<u>67</u></td><td><u>34</u></td><td>2</td><td>13</td></tr><tr><td>6급 이하 소계</td><td><u>1,409</u></td><td colspan="4"><u>1,409</u></td></tr><tr>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<td>1</td><td colspan="4">1</td></tr><tr><td>별정직 계</td><td>4</td><td colspan="4">4</td></tr><tr><td>6급 상당 이하</td><td>4</td><td colspan="4">4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 계	<u>1,492</u>	<u>1,492</u>				정무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487</u>	<u>1,487</u>				일반직	3급	1	1			4급	<u>9</u>	<u>7</u>	1	1	5급	<u>67</u>	<u>34</u>	2	13	6급 이하 소계	<u>1,409</u>	<u>1,409</u>				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별정직 계	4	4				6급 상당 이하	4	4				[별표 3]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</u> <u>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u> <table><tr><th>기관별 직급별</th><th>총 계</th><th>본청</th><th>구의회 사무국</th><th>보건소</th><th>동</th></tr><tr><td>총 계</td><td><u>1,499</u></td><td colspan="4"><u>1,499</u></td></tr><tr><td>정무직</td><td>1</td><td colspan="4">1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<u>1,494</u></td><td colspan="4"><u>1,494</u>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일반직</td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<u>10</u></td><td><u>8</u></td><td>1</td><td>1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<u>71</u></td><td><u>38</u></td><td>2</td><td>13</td></tr><tr><td>6급 이하 소계</td><td><u>1,411</u></td><td colspan="4"><u>1,411</u></td></tr><tr>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<td>1</td><td colspan="4">1</td></tr><tr><td>별정직 계</td><td>4</td><td colspan="4">4</td></tr><tr><td>6급 상당 이하</td><td>4</td><td colspan="4">4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 계	<u>1,499</u>	<u>1,499</u>				정무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494</u>	<u>1,494</u>				일반직	3급	1	1			4급	<u>10</u>	<u>8</u>	1	1	5급	<u>71</u>	<u>38</u>	2	13	6급 이하 소계	<u>1,411</u>	<u>1,411</u>				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별정직 계	4	4				6급 상당 이하	4	4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492</u>	<u>1,49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487</u>	<u>1,48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급	<u>9</u>	<u>7</u>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	<u>67</u>	<u>34</u>	2	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이하 소계	<u>1,409</u>	<u>1,40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499</u>	<u>1,49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494</u>	<u>1,49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급	<u>10</u>	<u>8</u>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	<u>71</u>	<u>38</u>	2	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이하 소계	<u>1,411</u>	<u>1,41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: 세출예산 순증가 (인건비)

-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

직급	4급	5급	6급 이하	비고
조정인원(명)	+ 1	+ 4	+ 2	

2. 비용추계 기준: 일반직 인건비

- 비용추계기간: 12개월(2026. 1. ~ 12.)
- 비용추계내역: 기본급+직급보조비+국민건강보험금+연금부담금+수당
- 비용추계 산출식: 4급(1명) 인건비+5급(4명) 인건비+6급(2명) 인건비

3.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비용추계 총 인건비	직급별 1인당 평균 인건비			비고
		4급(연봉제)	5급(연봉제)	6급(21호봉)	
합 계	831,798	144,282	124,316	95,126	
기본급	582,866	106,148	92,320	53,719	
직급 보조비	21,240	4,800	3,000	2,220	
국민건강 보험금	25,644	4,512	3,875	2,816	
연금 부담금 등	145,275	25,513	21,961	15,959	
수당	56,773	3,309	3,160	20,412	

※ 수당: 시간외근무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성과상여금 등